

기안용지

분류기호	계획 415	(전화번호 318)	전결규정 3 조 5
문서번호			제 2부시장 전결사항
제외기한		기안자	결재
시행일자	1970. 2. 23	도시계획과 권오집	제2부시장
보존년한		기안일자	1970. 2. 19
		70. 2. 9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가로계획과장		
협조	은	(고시안결재) 법무과장	시법과장
경수참	유신조 각안참조	통발 검열 1970. 2. 23 서울특별시 공제과	서
제목	도시계획 소로 변경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소로중 별첨 복명서와 같은 사유가 있어 변경 고시코저 도시계획법 제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별안과 같이 고시 하고저 하오니 재검을 바랍니다.			
제 2 안			
서울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 소로 변경			

서울특별시

2378 시법삼성(도원(제출))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소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합니다.

구 분	등급	구별 번호	특원	연장	기	집	종	범	비	고
변경전	소로	2 125	8	322	미아동	71	미아동	81		
변경후	"	4 127	4	100	"	79-35	"	81-44	특원축소	
변경전	"	2 21	8	333	용암동2-19		용암동35-49			
변경후	"	" 21	8	333	" 61-2		" 75-49		일부위치변경	
변경전	"	3 103	6	670	봉천동60		봉천동 47-1		48 구간위치	
변경후	"	3 103	6	670	봉천동60		봉천동47-1		변경	

1970. 2. .

서울특별시 장

제 3 안

수신 건설부장관

제목 동건

서울특별시 장

[인도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 도로 (소로) 를 건설부 고시 제 320호(67.5.5) 로 도시계획 권한 위임한 하상 제 1항이 따라별첨 고사 본 및 도면과같이 고시 하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 고시본 및 도면 부

제 4 안

수신 성북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영등포구청장,

귀구관내 도시계획 사항을 별첨 고시본 및 도면과 같이 고시 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면을 정비하는 등 시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계인의 종람에 공합니다.

첨부 : 고시본 및 도면 1부.

제 5 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서울우편시장

제목 동건

별첨 고시본 사본과 같이 고시 하였으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본 사본 1부

제 6 안 10

수신 시면과장

발신 서울우편시장

제목 동건

시내 성북구, 시면본, 영동로구내 별첨 고시본 및 도면과 같이 고시
하였거 통보하니 도시계획 연합 사무에 참고 하시게 바랍니다.

첨부 : 고시본 및 도면 3부. 끝.

복 명 시

명에 의하여 시내 영등포 봉천동 32-2 번지 앞 도로 3-103
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현장 조사 하고 다음과 같이 복명합니다.

1970. 2. 5

지방토목기원 조 근 회

서울특별시 시장 리 하.

조 사 내 용.

1. 위치 시내 영등포 봉천동 32-2 번지 앞 도로 3류 103호
2. 현황 이 지역은 1969. 1. 18 서울시의 제3호로 기획
확정되어 왔으나 본구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구부지땀도로부지)와 상이하고 지적선 접합
관계로 계획선이 연결되지 않았음.

3. 의견 상기 의견을 감안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구
땀도로부지)로 계획선을 일부 변경 및 지적도약
에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연결함이 같은 계획 및
도시 이용상 ~~부합~~ ^{가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조사


구 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면적	기 점	종 점	비 고
변경전	노로	3	103	6m	670㎡	봉천동 60	봉천동 49-1	48m 구간 계획도로 위치 일부 변경
변경후	"	"	"	"	"	"	"	

끝

주 명 다.

평에 의하여 내연구 응암등 1-3 번지 앞 도계회 도로에
이전 산정지를 현행자 전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970. 2. 5.

지방토목가원 김 등 

새로 특별 지정 카하.

조사 내용

1. 위치 : 새. 내연구 응암등 1-3 번지 앞.

2. 도로폭 : 폭 8m. 연장 333m.

3. 산정내용

: 산정의 사유가 인정되는 도계회선 (폭 8m)을 산정의
5유지 중앙에 있는 공공용지 (도로부지 및 주거부지)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임.

4. 조사내용

: 본계회선은 하. 1. 18 내연구 리에 3호로 확장된
도로로서 폭 3~4m 의 현행주요도로가 있는 반면
5유지 공공용지는 주거가 부속되어 가건물이 설치
하여 있으며 하수시설은 아예 없는 지역임.

5. 의견

: 공공용지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도로를 사용하려면
모순없이 도계회 쪽 도로 확보가 용이하며,
가로 매등상 계회선을 주선으로 설치함이 가하므로
본계회선을 위치 변경으로 승인. 끝.